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-10호

「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, 제24조, 「우편대체법」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, 제37조, 「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」제5조, 제16조에 따라 우체국예금과 우편대체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3년 4월 23일

미래창조과학부부장관

우체국예금 및 우편대체 수수료에 관한 사항

제1조(우체국예금에 관한 수수료) ① 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통장을 재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.

구 분	수수료
분실	2,000원
오손	2,000원
무여백	무료

② 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예금자 외의 자가 예금자의 요구불예금계좌에 가입국 외의 체신관서에서 예입하는 경우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.

구 분	수수료(건당)
10만원 이하	면 제
10만원 초과	1,000원

제2조(우편대체에 관한 수수료) ① 우편대체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, 제37조에 따른 우편대체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.

구 분		수수료		비 고
납입	일반계좌	10만원이하	면 제	가입국 또는 가입자 본인 납입은 면제
		10만원초과	건당 1,000원	
	특별계좌	무료		
이체		일반이체	무료	
		자동이체	별도약정	
수표추심		면 제		
양도 및 승계		면 제		
우편대체수표 용지		면 제		

제3조(기타 수수료) 제1조, 제2조에서 규정하지 않은 수수료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우체국 창구 또는 우체국예금·보험홈페이지(http://www.epostbank.go.kr)에 게시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